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706]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4-05-22]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10-24]	optionspecialty@naver.com

옵션스페셜티커피

정 보 공 개 서

「옵션스페셜티커피 역삼본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옵션스페셜티커피 역삼본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에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1층 101호]

[전화 : 02-515-2220]

[팩스 : 02-516-222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515-222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옵션스페셜 티커피 역삼본점	옵션스페셜티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1층 10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1.03.15.	김예슬	02-515-2220	02-516-222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329-04-0190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옵션스페셜티커피]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옵션스페셜티커피	
상 호	옵션스페셜티커피 ○○○ 점	당사는 보통 해당지역을 사용하여 가맹점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옵션스페셜티커피	출원 준비 중입니다.
상 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6,106	3,557	-29,662	281,754	-33,012	-29,662
2022년	347,609	314,993	32,616	511,169	-17,725	-23,721
2023년	665,732	357,941	307,790	411,854	2,216	-12,825

2)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 명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예슬	대표	2021.03.15 ~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u>2023년 12월 31일</u>	상근	비상근	0
	1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옵션스페셜티커피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		-	-
▶ 당사의 위 상표 중 일부 재 출원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옵션스페셜티커피] 를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사실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03.15.)

2. [옵션스페셜티커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옵션스페셜티커피 역삼본점	옵션스페셜 티커피	김예슬	가맹계약체결사실없 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1 층 101호

3. [옵션스페셜티커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옵션스페셜티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1	1		1	1		1
서울	1		1	1		1	1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충북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2022년						
2023년						

6. [옵션스페셜티커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옵션스페셜티커피]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서울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해당 없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년		

해당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금융기관과 가맹금 예치계약을 한 후에 가맹금 예치제의 이용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체결 예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옵션스페셜티 역삼본점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예외조건)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은행 예치	반환 안됨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교육비	11,000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은행 예치	교육 후 반환 안됨	개정 전 교육비로 소요	개정 전 교육 미 이수 시 반환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3,000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위약금 발생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19,500
가맹비	5,500
교육비	11,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부가세 해당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평 기준)(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기한	비고
인테리어	가맹본부	24,200	2,420	계약시 협의	
간판	가맹본부	5,500	550	계약시 협의	외부 LED 채널, 내/외부 실사
주방기기 및 설비	가맹본부	55,000	5,500	계약시 협의	
주방집기	가맹본부	5,500	550	계약시 협의	
POS 시스템	미정	임대	-	계약시 협의	
초도물품	가맹본부	5,500	550	물품공급 1일 전	
가구	가맹본부	4,950	495	계약시 협의	330/3.3㎡
오픈판촉비	가맹본부	2,200	220	계약시	유니폼, 홍보물 등
총계		102,850	10,285		33㎡ 기준

- ▶ 귀하가 인테리어 · 간판 · 장비 · 설비 등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집기를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사는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하며 귀하는 3.3 제곱미터당 일금 삼십삼만원(W330,000)(VAT포함)의 도면비, 감리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리는 이미지 및 컨셉관련 부분을 의미하며, 당사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별도로 계약하고 위 도면비, 감리비를 해당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철거, 가스공사,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전기증설, 어닝, 접이문, 전자제품, 외부파사드, 정화조, ccTV, 스피커, 앰프 등은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 20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 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만 20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최초 가맹금의 납부 방법

☞ 영업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해당 항목별 기한 내에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 부기준은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1%	익월 5일	반환안됨	후불	
정기교육(수시)	가맹본부	설비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측이 배분하여 부담	통지 후 14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부담	통지 후 14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	실사 후 상호				부득이한 경우 변경됨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의하여 결정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Ⅶ.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Ⅶ.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반환없음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Pos 사용료	가맹본부	월 44	익월5일	반환 안됨	후불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추가 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거나 원할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금에서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에서 최초의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귀하는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가)의 경우에 준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

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옵션스페셜티커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교육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매뉴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귀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
용에 따라 지체1일당 3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
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옵션스페셜티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옵션스페셜티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

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물류					
물류					
물류					
계				0	

2) 당사가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카페라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모카, 바닐라빈라떼, 밀크카라멜라떼, 아이 슈페너, 콜드브루, 오토 넛크림라떼, 콜옵션라떼, 더블초콜릿, 우유(기본 우유, 오토우유, 락토프 리), 아이스, 쿠키, 토스트, 케이크, 로얄밀크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간판철거와 계약해지	문의 : 당사 (02-515-222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옵션스페셜티커피의 타가맹점사업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차 위반: 구두경고 2차 위반: 서면 시정 요구 3차 위반: 물류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 기재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카페라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모카, 바닐라빈라떼, 밀크카라멜라떼, 아이슈페너, 콜드브루, 오토넛크림라떼, 콜옵션라떼, 더블초콜릿, 우유(기본우유, 오토우유, 락토프리), 아이스, 쿠키, 토스트, 케이크, 로얄밀크티	상권에 따라 귀하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공문발송 및 전화통지	지역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티, 케이크, 아이스, 쿠키, 토스트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옵션스페셜티커피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	특수 상권 내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표시 (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비 특수상권	가맹점으로부터 200m로 원칙으로 하되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 ‘특수상권’ 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옵션스페셜티커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2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2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2조 1항 3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2조 1항 3호 나목
○ 당사의 가맹사업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2조 1항 3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2조 1항 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3조 1항 1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채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3조 1항 2호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3조 1항 2호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수시)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POS 등 설비 및 기기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원부자재의 자점사입 기타 판매금지 조항(제21조)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33조 1항 2호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3조 1항 2호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3호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3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3조 2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3조 2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2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2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3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3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3조 2항 9호

만일 귀하의 사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1조)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서면에 의한 요청 및 서면합의를 통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02-515-222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리행사 시킬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의 사후통지 및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 → 요건 검토 → 승인통지(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	교육비 지급 및 교육수료
업무위탁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위탁자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대리행사	불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가맹본부의 [옵션스페셜티커피]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옵션스페셜티커피]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커피, 티, 케이크, 아이스, 쿠키, 토스트류 등과 관련된 업종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문의: 가맹본부 (02-515-222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9시 ~ 오후 9시	연중 무휴	문의: 관리팀 (02-515-2220)

- ▶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휴업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휴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나아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직접 근무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 및 지역단위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	광고 및 판촉계획→ 가맹점 통 보 →비용입금→광고 시행	
	브랜드 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 브랜드 광고				
전국 및 지역단위 판촉					
가맹점 자체 광고 · 판촉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주)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의 두가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① 사전 약정

당사 및 귀하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 합니다.

② 사전 동의

당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주) 위 1항 및 2항의 절차를 거친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가 계획, 주관하여 당사가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에 대한 판매, 사용 등의 공동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당사에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가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4조(계약종료 후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 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5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벌로 4,000만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각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자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즉시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즉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 사항 검토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1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2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25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4일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 결정) 오픈팅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

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제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 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02-515-222 0)
가맹 점사 업자 요청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옵션스페셜티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개별 또는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정기교육 (수시교육)	메뉴 교육, 서비스교육, 시스템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교육

☞ 귀하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당사에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옵션스페셜티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교육	1주일 내외	11,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 (수시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실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관리자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옵션스페셜티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1층 101호
2			
3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11,85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515-222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옵션스페셜티커피 역삼본점	영업표지	옵션스페셜티커피
제공확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옵션스페셜티커피 역삼본점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옵션스페셜티커피 역삼본점	영업표지	옵션스페셜티커피
제공확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옵션스페셜티커피 역삼본점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별첨1. 직전3개년도 재무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